

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

심의일자	2021. 6. 10.(목) 14:00		
사업명	서초구 서초동 1595-3번지 외 2필지 서초노블루체 신축공사(보완)		
신청위치	서초구 서초동 1595-3번지 외 2필지		
의결번호	(구조)2021-9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구조안전

-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,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[인·허가권자가 확인](#)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,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구조안전 분야 >

-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를 구조일반사항(구조도면)에 추가하여 시공자가 걱정한 내진상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.
- 조치계획 14번에서 보, 기둥 일람표에 '내진상세 적용할 것'이라고 명기하였으나 전이기둥, 전이보는 현재 도면에 작성된 내진상세가 아니라 전이부재의 내진상세를 적용해야 하므로 '전이부재 내진상세 적용할 것'이라고 명기하고 전이부재의 내진상세를 별도로 작성하기 바람.
- 현재 도면에 작성된 상세는 보완 필요함.
 [S-431]전이보 배근 상세도는 2층거더와 3층 전이보는 내진상세가 중간모멘트 골조 내진상세와 전이보 내진상세로 별도로 구분 작성되어야 하므로 정리하고 구조 일반사항과 함께 정리 바람.
 [S-371]RC기둥 배근상세도에서 작성된 기둥HOOP배치 상세도는 구조일반사항의 기둥내진상세 참조하여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전이기둥 내진상세로 구분, 수정 작성 바람.
- 기초 배근상세에 D19 철근을 2대 번들로 설치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, 번들로 설치된 철근의 이음, 정착길이는 등가면적으로 환산하여야 함을 명기 바람.
- 지하외벽 설계 시 철근 직경 고려하여 피복두께 반영하기 바람.
- 주차타워의 피트바닥 설계하중 정리하고 슬래브 설계 추가 바람.
- 주차타워 철골부재의 접합부 설계 시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부재에 따라 고력볼트의 직경 조정을 검토 바람.
- 풍동실험 결과와 기준 풍하중을 비교하여 기준의 80% 이상인지 확인 바람.

- 주차타워 횡변위가 최대 166mm이고, 본 건물의 횡변위를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본동과의 이격거리 여유가 24mm로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격거리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바람(주차타워 횡변위에 대한 이격거리의 추가 여유치를 더 확보하여 조금 더 안전성을 가지도록 조치 바람). 끝.

2/2

2021. 6. 10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